

[후보자등록절차]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작성

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작성

- 신고기준일 : 후보자등록일 전 1개월 현재
 - ※ 다만, 미필자(병역준비역, 징 · 소집대상, 복무증인자)는 신고기준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· 복무확인서를 병역사항 변동이 없는 군필자, 면제자는 신고기준일 전 또는 이후 발행한 병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
- 신고대상자
 - 후보자 본인(여성후보자도 신고해야 함)
 - 후보자 본인의 배우자(후보자와 혼인기간 중에 현역근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)
 - 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(아들 · 손자 · 외손자)
- 신고사항

구분	신고사항
○ 18세인 신고대상자	병역준비역 편입사항
○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	병역판정검사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
○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	- 복무분야 -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- 계급 - 병과 및 군사특기 - 입영연월일 - 전역·소집해제 연월일 - 전역·소집해제 사유
○ 현역·보충역·대체역·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사람	- 복무분야 -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- 계급 - 병과 및 군사특기 -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
○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(편입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) ○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○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	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 (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·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)

<유의사항>

- ※ 신고대상자가 “비공개대상 질병·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 (혼인외의 출생자, 혼혈인, 고아)”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 그 질병명·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고서식의 비고란에 “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”라고 기재함
- ※ 복무 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복무 중인 군인이 발급받는 복무확인서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기재되어야 함
- ※ 병적증명서 발급신청 시 “공직자(등) 신고용” 용도로 신청하여야 하며, 병적증명서에는 복무부대(기관), 병과 및 군사특기가 기재되어야 함
- ※ (외)손자 중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(외)손자가 등재된 다른 가족의 “가족관계 증명서”를 별도 제출

- 신고서의 첨부서류
 -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
- 신고서식 : 다운로드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1. 10. 22.>

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				
후 보 자	①선거명		②선거구명	
	③소속정당명		④성 명	
⑤첨부서류 :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등의 병역사항(별지) <input type="checkbox"/> 병적증명서 ○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복무확인서 ○부				
본인은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	
년 월 일 위 후보자 (서명 또는 날인)				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				

- 주: 1. 무소속후보자는 "③소속정당명"란에 "무소속"이라 기재합니다.
 2. "본인 등의 병역사항(별지)"은 발급받은 "병적증명서" 또는 "복무확인서"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
<별 지>

본인 등의 병역사항				
①소속정당명	②선거명 및 선거구명	③성 명		
④본인과의 관계	⑤성 명	⑥생년월일	⑦병역사항	⑧비고

본인 등의 병역사항 작성요령

- ①항 "소속정당명"란에 무소속후보자는 "무소속"이라 기재합니다.
- ②항 "선거명 및 선거구명"란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③항 "성명"란은 신고의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.
- ④항 "본인과의 관계"란은 본인과 배우자(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) 및 직계비속(외손자 포함)을 구분하되, 직계비속(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)은 출생 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. 다만,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합니다.
 "기재요령"
 1. 본인, 배우자, 아들, 손자, 외손자로 구분
 2. 아들의 경우에는 "장남, 차남, 3남" 등으로 기재
 3. 손자, 외손자의 경우에는 "손자, 외손자"로만 기재
- ⑤항 "성명"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.
- ⑦항 "병역사항"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, "군번"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⑧항 "비고"란은 신고의무자가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배우자, 직계비속의 질병명·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"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"라고 기재합니다.